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2019. 9.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19-112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19년 9월 9일(월)
- 라. 회부일자: 2019년 9월 10일(화)

2. 제출사유

마포구 구립실버합창단의 창단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참여 가능한 합창단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목 변경
- 나. 구립예술합창단 중 구립실버합창단 신설(안 제2조)
- 다. 실버합창단 정원 조항 신설(안 제5조)
- 라. 실버합창단 단원 자격 조항 신설(안 제7조)
-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정비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나.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19. 8. 1. ~ 8. 21.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해당없음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원안 동의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2019. 8. 29.)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 기존의 조례가 구립 합창단의 구성에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구민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노년층으로 구성된 구립실버합창단을 창단하고 이의 운영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각각의 합창단 명칭을 구립예술합창단으로 통칭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조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에 구립실버합창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 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과 실버합창단의 정원은 8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기존의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자격과 더불어 실버합창단원은 만 56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구민으로 한다고 규정함.
 나머지 개정안은 본문 중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모두 “구립예술합창단”으로 그 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용어 순화 및 조문을 정비한 것임.

○ 검토 결과

- 최근 고령사회의 대안으로 50대 이상의 ‘생애전환 문화예술 교육 또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에서 노년층의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구립합창단의 구성에 실버합창단을 포함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버합창단의 운영으로 노년층의 고립감, 상실감을 치유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아 정체성의 확보에도 기여할 것임.

- 다만, 모든 국민은 성별, 세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하단 「문화기본법」 제4조, 제5조 참조) 관련 부서에서는 구립예술합창단의 구성 등에 특정 집단만의 참여를 경계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우리 사회 문화 소외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관련 법령 】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또한, 기존 구립합창단이 실버 합창단의 신규 창설 등 구립예술합창단으로의 규모의 확대도 좋으나 각각의 합창단 운영 내실화가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지난 2016년부터 각 주민센터별 주민이 주축이 되어 생활예술 커뮤니티 활동으로 지역문화 공동체 역할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꿈의 합창단’ 등 소규모 주민 합창단의 지원·육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버 합창단이 창단될 경우 예상되는 제반 비용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자료 】

☐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운영방법: 마포문화재단 위탁 운영
- 관련근거: 마포구 구립합창단 및 마포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 위탁기간: 2017. 10. 1. ~ 2020. 9. 30. [3년]
- 예 산: 142,000천원(2019년 기준, 민간위탁금)

☐ 합창단 현황

구 분	구립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일	2003.05.27	2004.12.13
단원 (2019.1. 현재)	24명 (정원 60명 이내)	47명 (정원 80명 이내)
단장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지휘자	김진수	길현미
반주자	정현정	김유나
2019년 총무	최연실(알토 단원)	김영지(성연두 단원 자모)
정기연습	매주 월·수요일 10:00-13:00 스튜디오2(필요 시 추가연습)	매주 화요일 18:00-20:30 스튜디오2(필요 시 추가연습)
2019년 예산	72,260천원	69,740천원